

제11.1호

행정명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2020년 초부터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2020년 1월 31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의료 커뮤니티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 했기 **때문에**,

뉴욕은 현재 2021년 4월 이후 국가가 보지 못한 속도로 코로나19 전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 병원 신규 입원의 비율이 증가하여 하루에 300명 이상의 신규 입원의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 정부는 주 전체의 병원 수용력이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바이러스가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시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SarCoV2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확인되고 우려 변이종이라고 명명되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50개 주와 104개 이상의 국가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매우 높고 지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의 백신 접종은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더 강한 반면, 오미크론 감염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Kathy Hochul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로써, 행정명령 11호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2022년 1월 25일까지 이어갑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임상 실험실 개선법(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cts, CLIA)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42항 H, J, K, M 세부절에 명기된 CLIA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실험 시설이 뉴욕 개인들로부터 채출된 표본에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제5항 V장 및 NYCRR 10장의 19항 및 58장 19절.
- 평가 부서의 관할 기구가 2021년 평가명부에 대한 면제부를 받는 모든 부동산 소유인에게 2022년 평가명부에 대한 이러한 절에 의거 면제를 부여하도록 평가사에게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의 갱신 신청서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평가사가 갱신 신청서를 해당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로 배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부동산 세법 459-c절의 하위 조항 7, 7-a 및 8 부동산 세법 467절의 하위 조항 5, 5-a, 5-b, 5-c 및 6. 단, 관리 기관은 2021년 평가명부에 대한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유자가 자신의 주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다른 소유자를 증서에 추가했거나, 재산을 새 소유자에게 양도했거나, 사망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평가자가 갱신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결 절차를 선택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상원 및 하원이 자유 재량으로 회의하고 회의 소집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법률에 의거 승인된 조치를 취하지만 2021년 법률 417장 파트 E의 조항을 준수하고 이러한 장의 만료 시 행동을 취해야 하는 범위까지 공직자법 7조.

2021년 12월 26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